

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

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·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(통지)할 수 없는 불임의 재산목록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
- 나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- 다. 사업의위치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일원

2. 공고기간 : 2020. 04. 06. ~ 2020. 04. 20.

3. 손실보상 계획

- 가. 협의 기간 :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
- 나. 협의 장소 :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,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
- 다. 보상 방법 :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
- 라. 보상 절차 :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
- 마. 구비 서류
 - ① 인감증명서 2통
 - ②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 이력 포함)
 - ③ 본인의 예금통장(손실보상금 수령용) 사본 1부
 - ④ 계약서, 청구서,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, 승낙서
 -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(대표자 선임,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) 및 문중규약 각 1부
 -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,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
 -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
 -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4. 공시송달 내역 : 붙임 참조

5. 향후 처리 계획

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

6. 기타 사항

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 함.

*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2020년 04월 06일

예천군 체육사업소장

